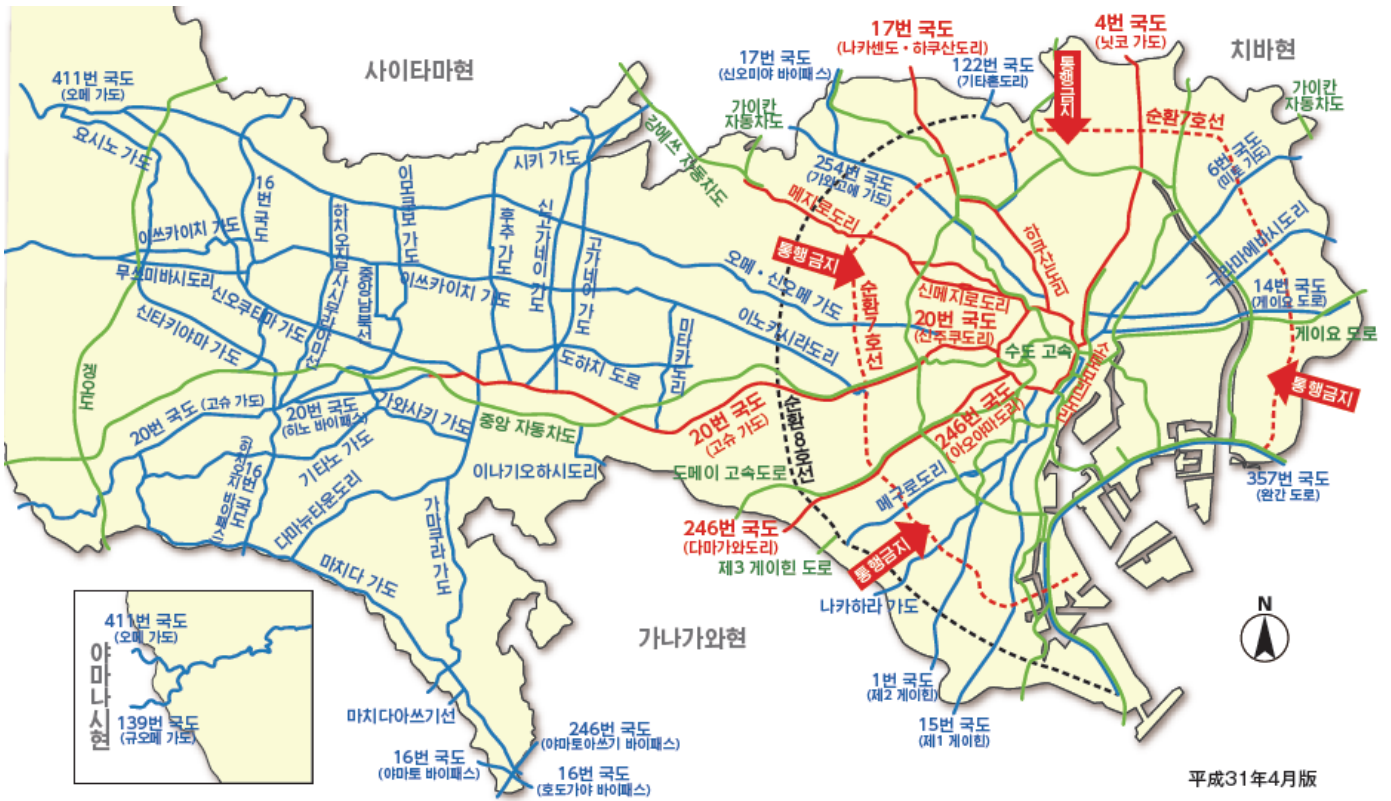


대지진 “진도6약(弱)이상” 발생시의 교통규제

【기본방침】

대지진발생직후는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인명구조,소화활동 등에 종사하는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규제(제1차 교통규제)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그 후 재해응급대책을 확실히 하고 원활하게 행하기 위하여 긴급교통로를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하여 확보(제2차 교통규제)합니다.

【교통규제도】



제1차 교통규제 (도로교통법)

- 1 순환7호선 부터 도심방향으로 차량 통행을 금지
도심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도심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통행금지 규제를 실시합니다.
- 2 순환8호선 부터 도심방향으로 차량 통행을 억제
신호제어에 의하여 도심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통행을 억제합니다.
- 3 “긴급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다음 7개 노선을 긴급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통행금지 규제를 실시합니다.

4번 국도 (닛코가도 기타)	17번 국도 (나카센도,하쿠산도리 기타)
20번 국도 (고슈가도 기타)	246번 국도 (아오야마도리·다마가와도리)
메지로도리·신메지로도리	소토보리도리
고속자동차국도·수도고속도로	

- 4 도내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중인 경우
이재상황에 따라 일반차량 교통규제를 실시한다.

제2차 교통규제 (재해대책기본법)

- 1 “긴급교통로”의 우선지정
긴급자동차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긴급교통로로 지정합니다.
- 2 그 밖의 “긴급교통로”의 지정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노선을 긴급교통로로 지정합니다. (주요 도로명)

1번 국도	8번 국도	14번 국도	15번 국도
신오미야 바이패스	기타혼도리	254번 국도	357번 국도
나카하라 가도	오메·신오메 가도	이노카시라도리 이쓰카이치가도 무쓰미바시도리	메구로도리
구라야에바시도리	10번 국도	20번 국도	139번 국도
야마토야쓰기 바이패스	이나기오하시도리	도하치 도로	고가네이 가도
후추·시키가도	가마쿠라 가도	가와사키 가도	신오쿠타마 가도
이모쿠보 가도	마치다 가도	마치다야쓰기선	하치오지무사시무라야마선
미타카도리	중앙남북선	다마뉴타운도리	신타키야마·타키야마· 요시노 가도
키타노 가도	신고가네이 가도	258번 국도 (고슈 가도)	

※ 정부의 수도권 전체에 대한 교통대책 책정이나 도쿄도 지역방재계획 개정을 위한 동향을 고려하여 긴급교통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진도5강(強)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교통규제 (도로교통법)

도심부의 교통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성에 따라 순환7호선 안 쪽에 대한 일반차량유입을 금지시킴과 동시에 순환8호선 안 쪽에 대한 일반차량유입을 억제합니다.

경시청